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7허7944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사 건 2017허7944 권리범위확인(디)
원고 주식회사 늘푸른광고산업
피고 A
변론종결 2018. 4. 19.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9. 26. 2016당203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622806호/ 2011. 6. 24./ 2011. 11. 22.

2) 물품의 명칭 : 안내판 걸이구

3)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갑 제4호증)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안내판 걸이구 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갑 제5호증)

1) 출처 : 2008. 3. 17.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30-483388호)에 게재됨

2) 물품의 명칭 : 도로표지용 표지판 걸이봉 지지구

3) 도면 : 별지 3과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7. 12.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6당 2033)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7. 9. 2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심결취소사유)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913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568 판결 등 참조).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물품의 동일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안내판 걸이구에 관한 것으로, 그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2) 공통점과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의 각 해당 부분을 편의상 아래 그림과 같이 칭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좌측면도·우측면도

평면도

사용상태도

없음

가) 공통점

두 디자인은, 1 여러개의 분할된 체결부재(체결편, 이하 체결부재 라 한다)가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결합에 의해 연결되어,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기둥을 감쌀 수 있도록 원통형의 형상을 형성하는 점, 2 체결부재들 중 한쪽이 개방된 구조의 체결부위가 있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체결부위를 연결함으로써 기둥에 고정되는 점, 3 체결부재의 오른쪽으로 브라켓이 연결되고, 브라켓의 오른쪽으로는 안내판이 설치될 수 있는 수평바가 볼트와 너트에 의해 결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4 브라켓은, 체결부재와 연결되는 왼쪽은 수직으로 긴 반면, 수평바가 연결되는 오른쪽은 수직으로 짧은 사다리꼴 형상인 점, 5 브라켓의 오른쪽으로 수평바가 끼워지면 브라켓의 오른쪽 끝단에 형성된 구멍을 통하여 볼트와 너트가 결합하여 수평바가 브라켓에 연결되고, 위 볼트와 너트 결합 부위에는 수직선이 형성되어 있는 점(,), 6 체결부재의 결합돌기와 결합홈은 돌출되어 결합되는 점(,), 7 수평바의 아랫면을 따라 안내판의 T자형 돌기를 끼울 수 있도록 수평바의 하단에 T형의 홈이 형성된 점(,), 8 브라켓의 강도 보강을 위하여 브라켓의 안쪽으로 각 면당 각 두줄씩의 리브(rib) 구조가 수직으로 길게 형성된 점(,), 9 브라켓과 수평바의 결합을 위해 별도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브라켓의 우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형성된 구멍을 통하여 수평바의 좌측면이 삽입되는 점, ⑩ 브라켓과 수평바를 튼튼하게 고정하고 수평바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브라켓의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를 끼울 수 있는 수직으로 길이가 긴 통공이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ㄱ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체결부재의 왼쪽에 체결부위가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체결부재의 위쪽에 체결부위가 있어(,), 이로 인하여 좌측면에서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돌기와 결합홈이 끼워진 구조와 체결부위가 결합된 구조가 직선을 형성하나(볼트와 너트가 결합된 구조가 보이지 않음,), 확인대상디자인은 체결부재가 위쪽에 있어 좌측면에서 볼 경우 볼트와 너트가 결합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의 중심부에는 통공이 없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의 브라켓의 중심부에는 2개의 통공이 있는 점(,), ㄷ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브라켓 왼쪽 중앙 부분에는 공통점 ⑩과 같이 직사각형의 긴 통공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같은 부위에 1개의 타원형의 긴 통공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눈썹모양의 긴 통공 1개가 더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3) 대비 결과

가) 공통점 1 내지 6은 아래 대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사용상태도

나) 다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리브 구조(공통점 8 부분)와 달리 선행디자인에서는 3줄의 리브 구조가 브라켓의 바깥 면에 형성된 점(,), 선행디자인에서는 브라켓과 수평바 사이에 별도의 부품을 끼워 결합시키므로 수평바는 결합부품의 단면과 같은 변형된 팔각형인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별도의 부품 없이 브라켓의 우측면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형성된 구멍을 통하여 수평바(다만 수평바의 하단에는 안내판 삽입을 위한 T형 홈 구조가 있음)가 삽입되는 점(공통점 9 부분), 선행디자인에서는 브라켓의 리브들 사이에 3개 및 4개의 구멍이 각 수직으로 천공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브라켓의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를 끼울 수 있는 수직으로 길이가 긴 1개의 통공만 있는 점(공통점 ⑩ 부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브라켓과 수평바 부분에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비하여 간결하고 깔끔한 심미감을 준다.

다)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도로명 등을 알려주는 안내판 걸이 구로서, 공통점 8 내지 ⑩은 위와 같이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있고,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가진다{두 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높은 곳에 설치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안내판 방향을 바라보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체결부위의 방향이 다른 것만으로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차이점 ㄱ 부분), 차이점 ㄴ, ㄷ은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이기도 하나, 브라켓의 중심부에 2개의 통공이 형성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미감적 차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차이점 ㄴ 부분), 브라켓 왼쪽 중앙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할 수 있는 통공의 모양과 개수, 배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만으로는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공통점을 상쇄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차이점 ㄷ 부분)}.

라. 대비 결과의 종합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제정
	판사	나상훈
	판사	이지영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안내판 걸이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참고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지주에 체결되는 것이며, 돌출된 수평바의 하단에 안내판이 설치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의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 도면상 생략된 부분의 길이는 0.8m 내지 1.5m임.

【도면】

본원 디자인은 안내판 걸이구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안내판 걸이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가로등이나 전신주의 지주에 체결되는 것이며, 돌출된 수평바의 하단에 안내판이 설치되는 것임.
3. 수평바에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생략된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도면상 생략된 길이는 70mm임.

【도면】

별지 3

선행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도로표지용 표지판 걸이봉 지지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제임.
2. 본 디자인은 표지판이 현수되는 걸이봉을 지주의 외주에 결합된 포스트클램프에 수평으로 부착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임.
3. 본 디자인은 참고도 1 및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스트클램프와 힌지방식으로 연결되어 포스트클램프의 일부를 구성함과 함께, 걸이봉을 시소운동 및 임의위치에 고정가능하도록 지지하여 지주의 기울어짐 여부에 관계없이 표지판을 항상 수평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도면】

도로표지용 표지판 걸이봉 지지구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